

N Wallet 서비스 가맹점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N Wallet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N Wallet”이라 함은,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App” 이라 합니다) 또는 웹 사이트에서 금융기관의 계좌 등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 결제, 충전, 환불, 보내요, 카드, 쿠폰, 상품권, 멤버십, 스탬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하는 선불충전형 전자지갑(계정)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서비스”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회원”이 “가맹점”의 “단말기”에서 “N Wallet”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가맹점”이란 “N Wallet”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자의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단말기”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한 유·무선단말기 등을 말합니다.
- ⑤ “회원”이란 “N Wallet”의 약관 동의 및 가입절차를 이행한 후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⑥ “제휴사”란 “은행”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⑦ “입금계좌”란 “N Wallet”으로 “결제”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입금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 ⑧ “가맹점 수수료”란, “회원”이 “가맹점”에서 “N Wallet”으로 “결제”할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이 “은행”에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 ⑨ “정산대금”이란, “회원”이 “N Wallet”으로 결제할 경우, “은행”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결제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원을 말합니다.
- ⑩ “결제”란, “회원”이 “가맹점”에서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⑪ “거래승인”이란, “회원”의 정상적인 “결제” 거래에 대해 “은행”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입금계좌”의 등록 및 변경)

- ① “가맹점”은 “은행”에 “입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은 해당 “입금계좌”로 “정산 대금”을 입금합니다.
- ② “가맹점”은 제 1 항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N Wallet”이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과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회원”을 차별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③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전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④ “가맹점”은 “회원”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⑤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N Wallet” 거래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⑥ “가맹점”은 타 “가맹점” 명의로 “N Wallet”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가맹점”은 “회원” 또는 타 “가맹점” 등의 “N Wallet” “결제”를 대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⑧ “가맹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⑨ “가맹점”은 “서비스”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⑩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은 거래품목과 거래방식에 따라 “은행”과 별도의 전자상거래 및 결제대행(PC)서비스 가맹점 특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은행의 준수사항)

“은행”은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N Wallet”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입금계좌”에 “정산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은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거래방법)

-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N Wallet”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거래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단말기”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결제수단, 거래고유번호, 가맹점 명, 가맹점관리자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은행”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전표)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이 영수증(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⑤ “가맹점”은 1매의 영수증(매출전표)으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영수증(매출전표)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⑥ 영수증(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3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영수증(매출전표)을 폐기하고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영수증(매출전표)을 작성하고 원래의 영수증(매출전표)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7 조 (거래의 취소)

- ① 가맹점은 “회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N Wallet”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단말기”에 의한 거래취소 등의 방법으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정산대금”을 입금하기 전 제1항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정산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회원”의 “N Wallet”에 즉시 지급합니다.
- ③ “은행”이 “정산대금”을 입금한 후 제 1항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정산대금”을 입금 예정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며, 결제대금을 “회원”의 “N Wallet”에 즉시 지급합니다.
- ④ 입금 예정 “정산대금”이 취소된 거래의 “정산대금”보다 부족한 경우 “가맹점”이 부족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등에 의해 부족이 해소된 이후, “은행”은 결제대금을 “회원”의 “N Wallet”으로 지급합니다.
- ⑤ “가맹점”은 “결제” 후 90일 이내에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요청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회원”이 기 “결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가맹점수수료 및 정산)

- ① “가맹점”은 “은행”과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은행”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과 협의한 대금지급주기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정산대금”을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계좌 오류, 입금제한 등 “입금계좌”에 입금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하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와 “은행”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③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 혹은 시장환경에 따라 “가맹점”과의 협의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 “정산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가맹점”이 제4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산대금” 지급의 정지, 가맹점 계약의 해지 및 1년 이상의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급 정지된 “정산대금” 중 “은행” 또는 제 3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액의 지급은 “은행” 또는 제 3자의 손해 범위의 확정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정산대금” 지급 보류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보류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N Wallet”의 거래한도)

- ① “은행”은 “가맹점”에 대하여 1회 또는 1일의 “N Wallet” 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N Wallet” 거래한도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가맹점 비치물 및 표지물)

- ① “가맹점”은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은 각종 표지물, 양식 및 제 장표 (이하 “표지물 등”이라고 합니다)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은 “은행”으로부터 표지물 등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은 “은행”이 정하는 표지물 등을 “가맹점” 내외에 “회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거 “은행”의 동의를 받은 표지물 등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감독기관의 처분, “은행”의 정책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즉시 표지물 등을 교체하거나, 표지물 등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본 계약의 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표지물 등을 즉시 제거하고, 대여받은 표지물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N Wallet 거래에 대한 책임)

- ① “가맹점”은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N Wallet”에 의한 거래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N Wallet”의 실제 사용자가 “N Wallet” “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N Wallet”과 관련된 거래에 공모, 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기타 “가맹점”의 현저한 부주의에 의해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N Wallet”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회원”과의 분쟁)

- ① “N Wallet”에 의해 “결제”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N Wallet”에 의해 “결제”된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변경통지)

- ①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가맹점”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해 사유 해소시까지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맹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가맹점”이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지도 등을 위반한 경우
 8. “가맹점”이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한 경우
- ②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 “가맹점”은 “은행”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전매,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 “가맹점”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은행”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회원”도 “N Wallet”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 “가맹점” 또는 “회원”에게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한)

- ① 본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가맹점”의 가입신청을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은행”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계약만료일의 도래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에는 “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④

제 18 조 (신용정보 제공)

- ① “은행”은 정당한 “서비스”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가맹점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③ “가맹점”과 “회원”간 “N Wallet”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회원”의 요청과 “가맹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정보보호)

- ①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은행”의 각종 업무상의 기밀 및 회원 정보를 “은행”이나 “회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가맹점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가맹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은 본 가맹점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제 20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